

제안 설명

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최기찬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, 학교 현장에서도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4조1항 “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·연구·교육·제도 등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 역시 “평화로운 학교 운영계획(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)”을 수립하여 학기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는 사건 발생 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, 학생들은 학교에 적극적으로 알

리지 못하며, 특히 사건 발생 시 사후적 처벌이 강조되고 있어 예방적 차원의 대책 마련과 보완이 시급한 실정입니다.

본 조례안은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및 배포를 통해 좀 더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. 또한,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가해유형, 피해자 행동요령 및 피해 사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,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의 교육연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.

특히, 학교폭력 현장을 보게 되었을 시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명시하고 신고자의 정보보호를 통한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. 그동안 신고자들의 이름이 노출되고 이로인해 보복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아무쪼록,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